

# 추가약정서

(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 추가약정용)

주식회사 제주은행 앞

20 년 월 일

채 무 자 : \_\_\_\_\_ (인)  
주 소 : \_\_\_\_\_  
담보제공자 : \_\_\_\_\_ (인)  
주 소 : \_\_\_\_\_

채무자 및 담보제공자는 주식회사 제주은행(이하 “은행”이라 합니다.)과 약정한 20 년 월 일자 대출거래약정서(가계용)에 추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합니다.

제 1조 (목적) 이 약정서는 주택매수 목적이 아닌 의료비, 교육비 등 생활자금 조달 목적으로 대출거래를 하기 위한 약정입니다.

제 2조 (기 보유 주택) 채무자 또는 담보제공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분양권 또는 입주권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.

① 담보를 제공하는 주택

종류	소유자	주소

② 보유 중인 주택 또는 분양권 또는 입주권 등

종류	소유자	주소

제 3조 (주택 추가 매수 금지의무)

① 채무자 또는 담보제공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은 본 대출 만기시 까지 제 2조에 명시된 주택 외에 추가로 주택을 매수하지 않습니다.

② 채무자 또는 담보제공자는 본 대출 만기시까지 세대주 또는 세대원(세대별 주민등록표(「출입국관리법」에 따른 외국인 및 「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」에



따른 외국국적동포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포함)상에 배우자, 직계존속(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),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를 말하며, 세대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를 포함)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 내용을 은행에 신고하여야 합니다.

제 4조 (증빙자료) 대출금액이 1억원을 초과할 경우 채무자는 자금 용도 관련 자료를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.

제 5조 (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)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(가계용) 제 7조 제 4항 제 2호에 의하여 본 대출의 기한의 이익은 상실하게 되고, 그에 따라 본 대출을 즉시 변제할 의무를 집니다.

1. 채무자 또는 담보제공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본 대출 전액 상환전까지 제 2조에 명시된 보유주택, 분양권, 입주권 등 외에 추가로 주택, 분양권, 입주권 등을 매수한 경우
2. 채무자 또는 담보제공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대출실행일 기준으로 제 2조에 명시되지 않은 주택, 입주권, 분양권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
3. 채무자가 제출한 자금 용도 관련 자료가 사실이 아닌 경우

제 6조 (여신거래 약정위반)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 대출 완제여부에 관계없이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자 또는 담보제공자의 약정 위반사실이 제공됩니다.

1. 채무자 또는 담보제공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본 대출 전액 상환전에 제 2조에 명시된 보유주택, 분양권, 입주권 등 외에 추가로 주택, 입주권, 분양권 등을 매수한 경우
2. 채무자 또는 담보제공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대출실행일 기준으로 제 2조에 명시되지 않은 주택, 입주권, 분양권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
3. 채무자가 제출한 자금 용도 관련 자료가 사실이 아닌 경우

